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12.

발의자 : 이종명 · 김성찬 · 황영철

박명재 · 김승희 · 신보라

유민봉 · 이완영 · 김규환

심재철 · 추경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전상·공상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전상·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, 제9조제2항 등)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”을 “상이를 입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”을 “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 중 “제9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장은 제3항”을 “장은 제4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(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)이 전역 예정일(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)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역일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요건이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<u>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</u>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”</p>	<p>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상이를 입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.</p> <p>제9조(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) ①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④ 국가보훈처장은 <u>제3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·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⑤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<u>장은</u> <u>제3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p>	<p>-----.</p> <p>제9조(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(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)이 전역 예정일(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)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역일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-----<u>장은</u> 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</p>
--	--

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